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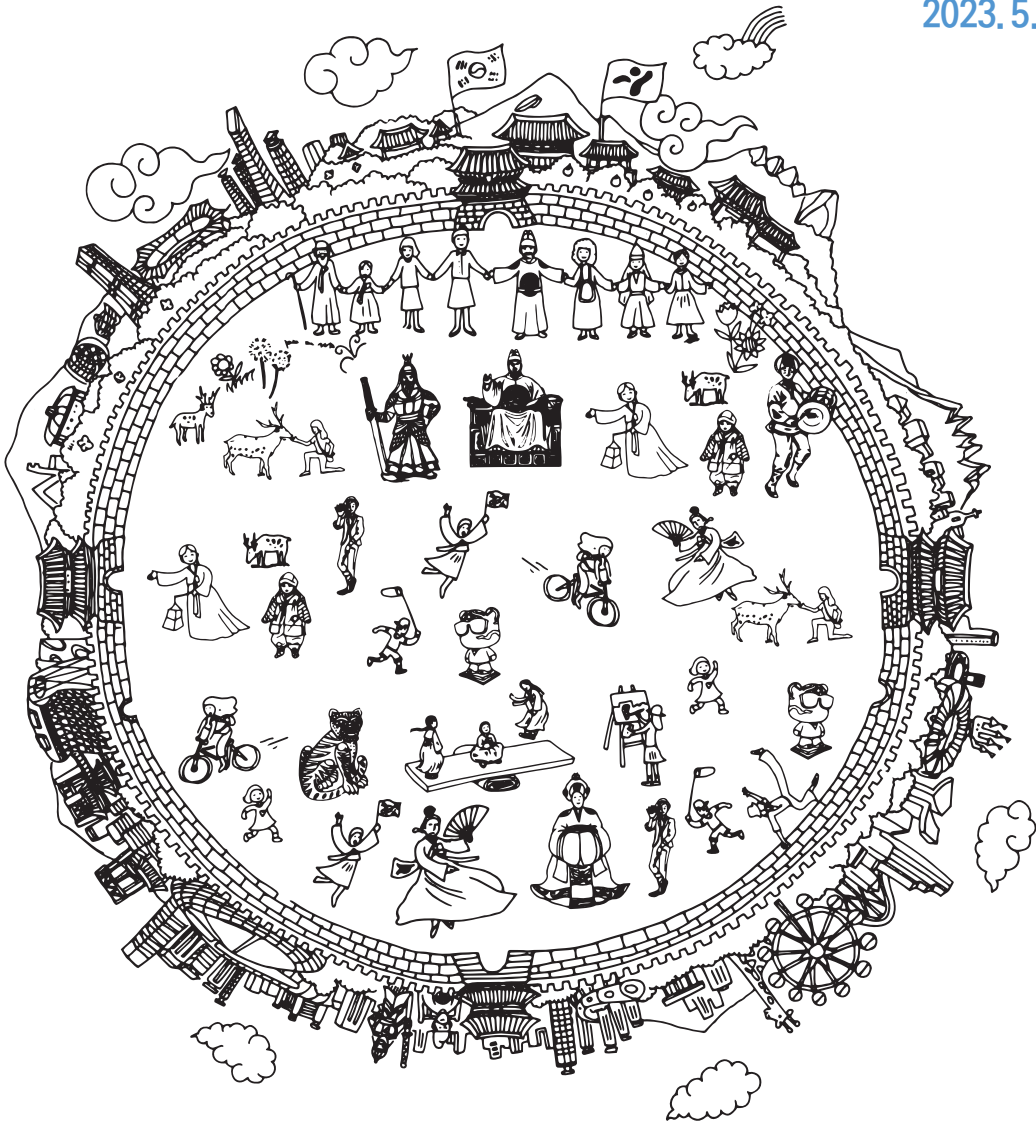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74호
2023. 5. 19.(금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입법예고]

2023 - 1510	 2
2023 - 1511	 6

자치법규 등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1510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6조

.

2023. 5. 19.

1.

2.

- 가. ‘ (1)
 (3)
 - ()
 ▶ 1 (' 23.7.17. ~ ' 24.7.16.)
 - ()
 ▶ 1 (' 23.8.19. ~ ' 24.8.18.)

3.

2023. 5. 23.
 (:)
 (: 02 - 2133 - 6729)

1)

가. (.)
 . (),

2)

- : 110
 - : kyoni05@seoul.go.kr
 - : (http://legal.seoul.go.kr)
- (http://legal.seoul.go.kr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이 조례의 개정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1 4 . ,

1.

2. 가

3.

8448 3 “ 2023 8 18
 ” “ 2024 8 18 ” .

1 () 2023 7 17 .

2 () 21 4 2024 7 16

신 · 구조문대비표

21 () ~ () < _____ > < 8448 , 2022.8.8 > 3 () 21 , , <u>2023 8 18</u> .	21 () ~ () _____ _____, _____ _____. 1. _____ _____ 2. _____ 가 _____ 3. _____ _____ < 8448 , 2022.8.8.> 3 (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2024 8 18</u> - - - - -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

2.

「

」 3 1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 ·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 · 위원회 · 시장 ·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·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

「

」

4.

(2133 - 6729)

◆ **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1511호**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이유

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·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‘한강사업추진단장’ (3급) 1명 및 그 산하에 ‘한강사업총괄부장’ (4급) 1명, ‘한강전략사업부장’ (4급) 1명 정원 신설
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△3 → 3급 +1, 4급 +2

나.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연구직(10명) 및 지도직(1명)의 정원 조정

- (연구직) 407명 → 408명, 연구관 +10명 연구사 △9명 ※ 일반직 5급이하 △1

- (지도직) 24명 → 25명, 지도관 +1 ※ 일반직 5급이하 △1

다.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7명)
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△7 → 전문경력관(동물사육) +7

라.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1명)
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△1 → 전문경력관(고압가스안전관리) +1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조직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: 02 - 2133 - 672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

가. (·)
· (),

2)

- : 110
- : kyoni05@seoul.go.kr
- : (<http://legal.seoul.go.kr>)

(<http://legal.seoul.go.kr>)

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이 조례의 개정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4, 3, 4, 5, , , , , , , .

일반직 계	10,715					
3급	18	8		1	9	
4급	258	153	19	8	70	8
5급 이하 소계	10,235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
연구직 계	408					
연구관	73	8		41	24	
연구사	335					

지도직 계	25					
지도관	3			3		

2023 7 17 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4]

(4 1

)
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총 계	11,730					
(생 략)						
일반직 계	10,717					
(생 략)						
3급	17	8		1	8	
(생 략)						
4급	255	152	19	8	68	8
(생 략)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60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37					
(생 략)						
연구직 계	407					
연구관	63	5		34	24	
연구사	344					
지도직 계	24					
지도관	2			2		
(생 략)						

[4] - - - - -

- - - - -

- - - - -

구 분	계	본 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 의 제 행정기관
총 계	11,730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
일반직 계	10,715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
3급	18	8		1	9	
(현행과 같음)						
4급	258	153	19	8	70	8
(현행과 같음)						
5급 이하 소계	10,235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
연구직 계	408					
연구관	73	8		41	24	
연구사	335					
지도직 계	25					
지도관	3			3		
(현행과 같음)						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

2.

「

」 3 1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· 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 ·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**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 · 위원회 · 시장 ·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·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**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**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**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

,

가

5

「

」 3 1

4.

(2133 - 6729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